

전주지방법원 2021. 9. 7 선고 2021가단64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8. 17.

판 결 선 고 2021. 9. 7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. 3. 4. 부동산 중 각 2/9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9. 1. 21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소외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. 5. 6. 7. 부동산 중 각 2/9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9. 1. 21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19,873,1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는 원고에게 19,873,1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정은영

별지